

## Statement on Health Rights in the New Constitution

Korea Health Rights Working Group

### 헌법 상 건강권 보장에 대한 성명서

건강권 관련 보건의료학회 협의회

개정 헌법에 건강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개헌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헌법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공론화되고 있다. 그런데 개헌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은 권력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본권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예방의학회와 공중보건 관련 학회 등의 보건의료 및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현재의 건강 불평등 상황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보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현재의 헌법에 미약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연합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제12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아직도 최소한의 의료비 보장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과중한 경제적 부담까지 지고 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 보건의료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헌법 체계 아래에서는 건강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최고의 건강수준을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사회구성원이란 국민의 범주를 넘어서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건강권의 보장은 보건의료의 접근성 또는 비용 보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보건의료 외적인 건강 결정 요인으로 인한 건강의 격차 또는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강할 권리에 대하여 평등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미 서구 복지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번 헌법 개정안에 규정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건강권 규정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건강 수준 유지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의 초석이 될 것이다. 농·산·어촌 등 지역적으로,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취약한 계층에게도 보건의료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건강 수준의 격차를 줄일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권리의 측면에서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가가 일반 질병이든 업무상 재해이든 의료비와 소득 상실에 대하여 똑같이 보장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하게 가정, 일터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 나아가 건강할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보건의료 및 소득 상실의 보장을 넘어서야 한다. 건강 격차 또는 차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가 고용과 교

육, 주거, 영양, 식수, 대기, 환경, 안전 등 건강 결정 요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예방의학회 등 공중보건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사회구성원의 건강한 삶,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 개정안에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첫째, 헌법 개정안에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개정 헌법에서 건강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이주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셋째, 개정 헌법에서 건강권의 범위를 보건의료 외적인 건

강 결정 요인까지 확대하여 건강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예방의학회 등 공중보건학회는 이러한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 사회구성원 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8년 3월 9일

건강정책학회, 국제보건의료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역학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